



Contents

01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대한 안내

출생신고	3
사망신고	3
혼인신고	4
이혼신고	5
개명신고	6
입양신고	6
친양자입양신고	7
친양자입양과 일반입양의 차이점	7
가족관계등록부 정정	8
등록기준지 변경신고	9
성분변경신고	9

02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의 후속민원 안내

출생신고 후	10
사망신고 후	12
개명생년월일정정 신고 후	15

03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

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(5종)	16
등록사항별 증명서등의 발급수수료	16

04 기타

성년후견제도와 후견등기제도	18
고객맞춤형 가족관계 서비스	18



01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대한 안내

■ 출생신고

- 신고의무자
 - 부 또는 모
- 신고장소
 - 신고인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구청, 읍·면사무소
- 신고기한
 -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(지연시 과태료 최대 5만원)
- 구비서류
 - 출생신고서, 출생증명서 원본, 신고인 신분증
 - 복수국적 출생자에 대해서는 출생자 여권 지참
- 유의사항
 - 출생자의 성명은 인명용 한자만 사용가능하며 이름은 5자를 초과할 수 없음.
※인명용 한자 열람 : 대법원 전자민원센터(www.scourt.go.kr/minwon)

■ 사망신고

- 신고의무자
 -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
- 신고장소
 -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구청, 읍·면사무소
- 신고기한
 -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(지연시 과태료 최고 5만원)
- 구비서류
 - 사망신고서, 사망진단서(또는 신체검안서)원본, 신고인 신분증
 - 사망자의 주민등록증은 사망신고 시 반납(동 행정복지센터)

■ 혼인신고

○ 신고의무자

- 혼인 당사자

○ 신고장소

- 전국 구청, 읍·면사무소

○ 신고기한

- 없음

단,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혼인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
(위반시 과태료 최대 5만원)

○ 구비서류

- 혼인신고서 1부, 혼인당사자의 신분증(혼자 방문시 상대방 신분증 도장 지참)
- 신고인 신분증, 당사자 2명 날인 또는 서명, 증인 2명 날인 또는 서명
(서명의 경우, 서명자 본인이 직접 이름을 정자로 적어야함)

※본인 불출석 시 상대방의 본, 등록기준지, 부모 인적사항 열람 불가

▶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◀

○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

- ▶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원본 1부, 번역본 1부
(번역본에는 번역자의 인증 필요),
- ▶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
여권의 경우 여권 번역본 1부

○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

- ▶ 혼인증서 등본 원본 1부, 번역본 1부
- ▶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
여권의 경우 여권 번역본 1부

- 혼인신고 시, 자녀의 성·본을 모의 성·본으로 협의한 경우 협의사실을
증명하는 혼인당사자 협의서 1부

○ 유의사항

- 혼인연령 : 남·여 만 18세 이상
- 미성년자일 경우 : 부모 동의 필요



○ 기타사항

- 거주지 전입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별도 신고 필요
- 국제혼인 가정 상담서비스 제공
 - ▶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(☎ 248-9103)

■ 이혼신고

구 분	협의이혼	재판이혼
신고의무자	• 당사자	• 소 제기자 또는 상대방
신고장소	• 전국 구청, 읍·면사무소	• 전국 구청, 읍·면사무소
신고기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• 3개월 경과시 협의이혼 의사확인 효력 상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판결이 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• 기간 경과시 과태료부과 (지연시 최대 과태료 5만원)
구비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부 • 자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부 (미성년자가있는 경우만 해당) 	<p>〈재판의 경우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판결등본 1부 • 확정증명원 1부 <p>〈조정외 경우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조정조서 등본 1부 • 조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송달증명원 1부
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본 신청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등본 신청장소 : 당사자의 등록기준지,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• 등본 신청시 구비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1부 -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- 주민등록등본 1통 	

■ 개명신고

○ 신고의무자

- 개명허가를 받은 자
 - 의사능력이 없는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
 -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스스로 신고 가능(단, 피성년후견인의 경우, 신고사건의 성질 및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진단서 첨부)

○ 신고장소

- 전국 구청, 읍·면사무소

○ 신고기한

-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
-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최대 5만원

○ 구비서류

- 개명신고서 1부,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, 개명당사자 신분증
- 대리제출시 개명 당사자 도장(개명된 성명)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

■ 입양신고

○ 입양신고의 의의

- 입양 당사자(양자와 양친) 사이의 혼인 중의 자와 동일한 신분관계의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행위

○ 신고의무자

- 양친(양부 양모)과 양자
- 양자 13세 미만인 때에는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과 양친이 신고
- 미성년자 입양일 경우에는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첨부

○ 신고장소

- 전국 구청, 읍·면사무소

○ 신고기한

- 미성년자 입양시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
-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최대 5만원

○ 구비서류

- 입양에 대한 동의(친생부모의 동의시 신분증 지참, 동의자란에 도장 날인)
- 가정법원의 허가서 첨부(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)

■ 친양자 입양신고

○ 친양자 입양신고의 의의

- 종전의 친부모와의 친자관계를 종료 시키고, 양친의 혼인중의 자로 되는 입양을 말하며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제도

○ 신고의무자

-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자

○ 신고장소

- 전국 구청, 읍·면사무소

○ 신고기한

-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
-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최대 5만원

○ 구비서류

-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
- 친양자입양신고서 1부, 신고인의 신분증

■ 친양자입양과 일반입양의 차이점

구 분	친양자입양	일반입양
성립요건	• 재판	• 협의
자녀의 성과 본	•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	•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
친생부모와의 관계	• 종료	• 유지
효 력	• 재판확정 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종료	• 입양 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생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 없음

※ 파양신고

▶ 협의파양

- 양자본인, 양부모의 신분증, 도장 지참
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
- 신고인이 불출석, 제출인 출석의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

▶ 재판파양

- 재판상 파양의 경우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(신분증 지참)

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

>>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때 법원의 허가 또는 판결을 받아 등록부를 정정

- 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 정정(생년월일·개명·본 정정, 이중가족관계 등록부말소, 말소가족관계등록부 회복 등)
- 판결에 의한 등록부 정정(친생자관계부존재 확정판결 등)

○ 신고의무자

- 가족관계등록부 허가 신청자(소 제기자)

○ 신고장소

- 전국 구청, 읍·면사무소

○ 신고기한

- 허가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(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)

○ 구비서류

- 허가 등본 1통 또는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(재판의 경우)
-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서 1부, 신고인의 신분증



■ 등록기준지 변경신고

- 신고의무자 : 본인
- 신고장소
 -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구청, 읍·면사무소
- 구비서류
 - 등록기준지변경 신고서 1부, 신분증

■ 성·본변경 신고

- 신고의무자
 - 재판을 청구한 당사자
- 신고장소
 - 전국 구청, 읍·면사무소
- 신고기한
 - 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
- 구비서류
 - 허가 결정 등본 1부
 - 성·본 변경신고서 1부, 신분증



02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의 후속민원 안내

▣ 출생신고 후

✦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

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, 출산지원금, (다자녀)공공요금 감면 등 7개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제도

※2016.3.31.시행

○ 서비스 대상(7개 서비스)

- 전국공통서비스
 - 가정양육수당, (다자녀)전기요금 경감, (다자녀)도시가스요금 경감해산급여, 여성장애인 출산비용
- 지자체서비스(울산중구)
 - 첫째자녀 출산축하용품, 둘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
 -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, 유축기 무료 대여

○ 신청자격(대리 신청인 포함)

- 출산자 본인 및 배우자, 출산자의 직계가족
(출산자 친부모 또는 시부모)

○ 구비서류

- 신분증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(출생신고 후 별도 신청 시)

○ 신청기관 :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

○ 서비스별 신청기간 및 지원내역 : 하단참고

○ 신청절차

신청서 작성 ▶	신청서 제출 ▶	결과 확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출생자 주소지 동 주민센터방문• 신분증, 통장사본 필요 (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포함)• (다자녀) 공공요금 감면을 위해 고객번호 등 필요(전화문의 가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(접수처) 확인 후 접수• (접수처) 유의사항 및 결과 확인 방법 안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휴대폰 문자 안내 또는 안내 전화• (전기·가스) 차월 고지서에 감면 반영

행복출산 서비스 목록

유형	서비스명	처리기한 (통보방법)	주요내용	구비서류	문의처
일반 소득 무관	가정양육수당 신청 ※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경우 신청가능하며, 출생일로 부터 60일 이내 신청하여야 출생월로 소급 지원함 ※ 보육료 등으로 서비스변경시 반드시 변경신청 필요	14일 (문자, 우편, 서면 통보) ※ 매월 25일 입금	(일반) - 12개월 미만 : 20만원 - 12~24개월 미만 : 15만원 - 24~84개월 미만 : 10만원 (장애아동) - 38개월 미만 : 20만원 - 36~84개월 미만 : 10만원	통장사본(아동 또는 부모명의) - 장애인등록증 (장애인양육 수당 해당자)	동 행정 복지센터
	출산가구 전기요금 지원		-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 해당월 전기요금 30%할인 (월16,000원한도)	개인정보이용 또는 활용동의서	한국 전력공사 (☎123) 또는 사이버지점
다자녀 ※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3자녀 (또는 손) 이상	전기요금 경감 ※ 나이제한 없음	고지서 요금할인	전기요금 30% 할인 (한도 16,000원) ※ 기초수급자, 장애인 대상과 중복 경감 불가 (단, 감면폭이 큰 대상으로 혜택 제공)	- 자격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(필요시)	한국 전력공사 (☎123)
	도시가스요금 경감 ※ 동일세대 경우, 나이제한 없음	고지서 요금할인	- 취사용 가구: 420원/월 - 취사, 난방용 가구 동절기(12월~3월) 6,000원/월 기타(4~11월) 1,650원/월 ※ 기초수급자, 장애인 대상과 중복 경감 불가	※ 고객번호 등 필요	경동 도시가스 (☎1577-8181)
지자체 자체급부 (울산중구)	출산축하용품 신청 ※ 출생아의 부모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중구 거주 및 주민등록 ※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		1회 출산축하용품 - 20만원 상당 용품	- 신분증 - 출생증명서 또는 아기수첩	동 행정 복지센터
	둘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 ※ 출생일기준 1개월 전부터 중구거주 및 주민등록 ※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	신청일이 속한 월의 익월 15일	1회 일시금 지급 - 둘째출생 : 100만원 - 셋째 이상 출생 : 200만원 ※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과 중복지급불가	- 신분증 - 통장사본	동 행정 복지센터
	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 (장애 1급~4급) ※ 출생일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시 거주 및 주민등록 ※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	신청일이 속한 월의 익월 15일	1회 일시금 지급 : 100만원 ※ 여성장애인 출산비용(보건복지부) 및 둘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과 중복지급 불가	- 신분증 - 통장사본 - 장애인증명서 (필요시)	동 행정 복지센터
	유육기 무료 대여 ※ 분만 후 3개월 이내 신청	사전예약 필수	유육기 무료 대여 (대여기간 1개월)	- 신분증 - 출생증명서 또는 아기수첩	중구 보건소 (☎290-4343)
생계·의료·주거 급여 수급자	해산급여		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당 600천원	- 신분증 - 출생증명서 - 자격증명서서류	동 행정 복지센터
장애인	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(1~6급), (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)	신청일이 속한 월의 익월 15일	1인당 100만원 ※ (기초)해산급여와 중복지원가능	- 신분증 - 출생증명서 - 본인 명의 통장	동 행정 복지센터

■ 사망신고 후

✦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(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)

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, 토지, 자동차,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, 사망신고 후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·온라인·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제도

○ 서비스 대상(9개 서비스)

- 금융자산 및 부채 조회, 토지 소유내역 조회, 자동차 소유내역 조회, 지방세 체납 및 고지세액 조회, 국세 체납 및 고지세액 조회,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가입유무 조회

○ 신청기관 :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

○ 신청자격

- 제 1순위 상속인 : 사망자의 직계비속(자녀), 배우자
- 제 2순위 상속인 : 사망자의 직계존속(사망자의 부.모), 배우자(직계비속이 없는 경우)
- 제 3순위 상속인 : 사망자의 형제자매
- ※ 1순위 없는 경우-1순위 신청가능, 1.2순위 없는 경우 - 3순위 신청가능

○ 구비서류 : 신분증

○ 신청기관 : 전국 구청 및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○ 처리기한 및 결과 확인

- 토지·지방세 : 7일 이내 방문·문자·우편 중 선택 확인
- 자동차 : 접수처에서 바로안내
- 금융·국세·국민연금 → 20일 이내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
- 공무원연금공단,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→ 문자전송

※2017. 8.31부터 정부24(www.gov.kr)에서 온라인 서비스 운영

신청서 방법 및 신청자격 ▶	신청확인 ▶	신청결과 확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까운 시·구·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(신분증지참) • 제1순위 상속인 신청(자녀.배우자) ※단, 1순위 없는 경우 2순위 신청가능 1.2순위 없는 경우, 3순위 신청가능<증명서류 필요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접수증 수령 • 안내문 확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7~20일 이내 • [토지.자동차(즉시).지방세] - 방문·문자·우편 중 선택 • [금융]www.fss.or.kr 확인 • [국세]www.hometaxgo.kr 확인 • [국민연금]www.nps.or.kr 확인 • [공무원연금.사학연금] 문자전송

문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금융거래금융감독원(☎ 02-1332) 구세(국세청 ☎ 126) • 국민연금관리공단(☎ 02-1355) 공무원연금공단(☎ 1588-4321) •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(☎ 1588-4110) • 토지(중구청 민원지적과)(☎ 290-3470) 자동차(즉시) • 지방세(중구청 세무2과) (☎ 290-3410)
----	---

▣ 개명·생년월일정정 신고 후

✦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

- 신청기관 : 즉시
- 대상범위 : 개명, 생년월일 변경자
- 신청자 : 본인
- 소요비용 : 수수료 면제
- 구비서류
 - 기존 주민등록증, 최근 6개월 이내 증명사진(3X4cm) 1장
- 신청기관 : 동 행정복지센터(전국 모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)

✦ 자동차등록증 재발급

- 대상범위 : 개명, 생년월일 변경자
- 신청자 : 본인
- 구비서류 : 차량등록증, 주민등록초본, 신분증지참
- 신청기관 : 차량등록사업소, 정부민원포털 '민원24'

✦ 예금, 증권, 보험, 카드, 통신기록 변경

- 대상범위 : 개명, 생년월일 변경자
- 신청자 : 본인
- 구비서류 : 주민등록초본이나 기본증명서(각 회사마다 다름)
- 신청기관 : 해당은행 보험, 증권, 카드, 통신회사

✦ 인감 변경신고

- 신청기간 : 필요시
- 대상범위 : 인감등록된 자
- 신청자 : 본인
- 소요비용 : 수수료 면제
- 구비서류 : 새로운 인감도장, 신분증
- 신청기관 :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

✦ 여권 재발급 신청

- 신청기간 : 필요시
- 대상범위 : 개명(한자만 변경시 해당사항 없음), 생년월일 변경자
- 신청자 : 본인
- 소요비용 : 50,000원~53,000원
- 구비서류
 - 여권, 최근 6개월 이내 증명사진(3.5X4.5cm) 2장, 신분증
- 신청기관
 - 중구 민원지적과(☎ 290-3510~1)
 - 남구 민원여권과(☎ 226-5290~4)
 - 울산광역시청 민원봉사실(☎ 229-2528, 2595)
 - 동구 자치민원과(☎ 209-3832~3)
 - 북구 민원지적과(☎ 241-7573~4)
 - 울주군 민원지적과(☎ 229-7303~4)



✦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

- 신청기간 : 즉시
- 대상범위 : 개명, 생년월일 변경자
- 신청자 : 본인
- 소요비용 : 수수료 7,500원
- 구비서류
 - 기존 운전면허증, 신분증, 사진(3x4cm) 1장, 주민등록 초본, 위임장(위임시), 위임받은사람 신분증
- 신청기관
 - 가까운 경찰서(중부경찰서 ☎ 281-7000 신청후 7일 후 수령)
 - 울산면허시험장(☎ 1577-1120, 당일 수령)

✦ 부동산 등기부 명의변경 신청

- 신청기간 : 즉시
- 대상범위 : 개명(한자만 변경시 해당사항 없음), 생년월일 변경자
- 신청자 : 본인
- 소요비용 : 등기수수료 3,000원, 등록세 3,600원
- 구비서류 : 기본증명서, 신분증, 등록세영수필 확인서, 위임장(위임시)
- 신청기관 : 물건지 관할 등기소

✦ 기타 각종 명의 변경 신청

- 신청기간 : 즉시
- 대상범위 : 개명, 생년월일 변경자
- 신청자 : 본인
- 구비서류 : 기본증명서(상세), 주민등록초본, 신분증
- 신청대상 : 예금통장, 보험, 신용카드, 통신명의자

03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

▣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(5종)

구 분	기재사항	
	공통사항	개별사항
가족관계증명서	본인의 등록기준지 • 성명 • 성별 • 본 • 출생연월일 • 주민등록번호	부모, 배우자, 자녀의 인적사항 (기재범위-3대에 한함)
기본증명서		본인의 출생, 사망, 개명등의 인적사항
혼인관계증명서		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·이혼에 관한사항
입양관계증명서		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·파양에 관한 사항
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		친생부모,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·파양에 관한 사항

▣ 등록사항별 증명서등의 발급수수료

구 분	인터넷발급	방문발급(구·동)	무인민원발급
등록사항별 증명서 (일부사항증명서 포함)	무료	1,000원	500원
제적등본 (제적초본)	무료	1,000원	500원 (300원)

※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서비스 운영시간 안내

○ 대법원 인터넷 발급 (<http://efamily.scourt.go.kr>)

-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 →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 확인
→ 편리하게 증명서 발급 가능
- 2018.1.15.부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인터넷 서비스)
운영시간이 365일 24시간 제공으로 변경됨

번호	서비스	제공시간
1	열람 및 발급	24시간
2	인터넷 신고	24시간 가능
3	사용자 지원센터	평일 (09:00~18:00) 토·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



▣ 성년후견제도와 후견등기제도

✦ 성년후견제도란

- 기존의 금치산·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질병·장애·노령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자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(법정 임의후견인)을 선임하는 제도

※ 성년후견제도 관련 심판청구 - 관할 가정법원

✦ 후견등기제도란

- 성년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
각 후견 등기사항에 관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고 등기사항이 없으면 등기 사항 부존재증명서를 발급

※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- 전국 가정법원

▣ 고객맞춤형 가족관계 서비스

✦ 아기신분증 발급 서비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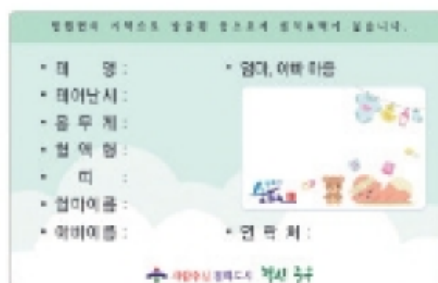
○대 상 : 출생 신고시 중구에 주소 등록을 희망하는 아기

○발 급 : 동 행정복지센터

○구비서류 : 신청서, 사진1매(담당자 이메일 제출)

○내 용

- 출생 신고시 희망자에 한하여 아기출생등록증 무료 발급



✦ 혼인신고부부 혼인신고기념 포토존 서비스

- 대 상 : 구청 방문 혼인신고 부부(희망자)
- 장 소 : 중구청 민원지적과(민원가족등록계)
- 내 용
 -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기념촬영 후 신고인의 휴대폰으로 축하인사말과 사진 바로 전송



울산큰애기

✦ 혼인신고 동시에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

- 대 상 : 혼인신고시 중구에 전입을 희망하는 자
 - ※ 혼인당사자 한명이 중구에 단독세대 구성 또는 배우자가 세대원 편입시 가능
- 장 소 : 구청 민원지적과(민원가족등록계 1번 창구)
- 내 용
 -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 원스톱 처리
 - 접수된 전입 신고서는 스캔 후 해당동에 즉시 온나라 - 메일로 전송, 전입신고 당일 처리 완료